

약관

판매일 2021년 4월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헤아림**

Customer's Property first

상가, 건물 등 일반건물과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
기계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사업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헤아림 기업종합보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설계해 드립니다.

 **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기업종합보험 약관

(2021. 4. 1.)

■ 약 관

□ 보 통 약 관

제1장 화재손해조항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보상하는 손해)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제6조(보험금의 청구)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10조(손해방지의무)
-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제12조(현물보상)
- 제13조(잔존물)
- 제14조(대위권)
- 제1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 제16조(추가조항)

제2장 기계손해조항

- 제17조(목적)
- 제18조(용어의 정의)
- 제19조(보험가입금액)
- 제20조(보상하는 손해)
-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22조(관리의무)
- 제2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제24조(보험금의 청구)
- 제2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2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2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28조(손해방지의무)
- 제29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제30조(현물보상)
- 제31조(잔존물)
- 제32조(대위권)
- 제3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3장 배상책임손해조항

- 제34조(목적)
- 제35조(용어의 정의)
- 제36조(보상하는 손해)
- 제3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제39조(보험금의 청구)
- 제4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4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43조(보험금의 분담)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4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제47조(대위권)
제48조(양도)
제49조(조사)

제4장 기업휴지손해조항

제50조(목적)
제51조(용어의 정의)
제52조(매출액 및 이익률의 조정)
제53조(보상하는 손해)
제5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5조(손해액의 계산)
제56조(약정복구기간)
제57조(면책기간)
제58조(보험금의 지급)
제59조(보험금의 청구)
제6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62조(손해의 경감)
제63조(보험금 지급 후의 보험가입금액)
제64조(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제5장 일반조항

제6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6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6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69조(청약의 철회)
제7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71조(계약의 무효)
제7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3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7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7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7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7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7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79조(계약의 해지)
제8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8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82조(보험료의 환급)
제83조(분쟁의 조정)
제84조(관할법원)
제85조(소멸시효)
제86조(약관의 해석)
제8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8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89조(개인정보보호)
제90조(준거법)
제9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특 별 약 관

제1장 화재손해조항 특별약관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구내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풍수재(설해 포함)위험담보 특별약관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지진위험 보상한도액 추가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설해 포함)위험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담보 특별약관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건물소유자의 중업원배상책임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I)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II)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냉동(냉장) 위험담보 특별약관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유가증권재발행비용담보 특별약관
야외간판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폭음과 특별약관
선박접촉손해 특별약관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실손보상 특별약관
가액협정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장 기계손해조항 특별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특별약관
특별조건
특별비용 특별약관
항공운임 특별약관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특별조항
 기계장치 내부의 화재, 화학적 폭발 및 낙뢰 특별약관
 내용물 손실 특별약관
 용광로, 보일러의 내화물 및 석조물 특별약관
 윤활유 및 냉매 특별약관
 이동성 기계 특약(Hull Risk)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 특별약관
 전구류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이익상실 특별약관
 콘베이어벨트 및 체인 특별약관
 연소엔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나선식 전기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대형전동기 유지관리 추가약관
 가스터빈 연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 추가약관
 심정펌프 및 수중펌프 유지관리 추가약관
 각종 터빈 및 터보 발전기 세트 유지관리 추가약관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추가약관

제3장 배상책임손해조항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비행 추가특별약관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도급업자 특별약관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신입생 추가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Ⅱ)
 주차장 특별약관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바케트/그래브사고 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항만하역위험확장부담 추가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화재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도난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

-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 청과류·채소류 추가특별약관
-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 귀중품 추가특별약관
 - 공동주택 추가특별약관
 -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관
 - 경보기계설비의 고장 추가특별약관
 - 수송경비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 하청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인격침해 특별약관
-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 구외보트 추가특별약관
-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Ⅰ)
 - 전기공급차질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 인증기관 마크계약 추가특별약관
 -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
 -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1)
 -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2)
 - 유전자, 동식물 성장 관련 소송위험 면책특별약관
 - 환경호르몬 관련 소송위험 면책특별약관
 - 품질저하 부담보 특별약관
 - 광우병, 구제역, 패혈증, 비브리오균 제외특별약관
 - 농협 납품분 한정특별약관
-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Ⅱ)
 - 전기공급차질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 인증기관 마크계약 추가특별약관
 -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
 -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1)
 -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2)
 - 유전자, 동식물 성장 관련 소송위험 면책특별약관
 - 환경호르몬 관련 소송위험 면책특별약관
 - 품질저하 부담보 특별약관
 - 광우병, 구제역, 패혈증, 비브리오균 제외특별약관
 - 농협 납품분 한정특별약관
-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
 -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초과보상 추가특별약관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주차장 추가특별약관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 음식물 추가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 추가특별약관
-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임차자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4장 일반조항 특별약관

- 혼합(Package)보험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화재손해보장 제외 특별약관
- 기계손해보장 제외 특별약관
- 배상책임손해보장 제외 특별약관
- 기업휴지손해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1장 화재손해조항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화재손해조항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

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

- 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②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③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④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추가조항)

계약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선계약 추가조항

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② 작업금지 추가조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 회사에 알린 작업보다 더 위험한 작업(적용한 요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위험품 추가조항

창고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배급업자 및 도매업자 점포 포함), 저장용탱크, 사일로 및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또는 야적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아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1. 보통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A급, B급 및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2. A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B급 및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3. B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④ 화기금지 추가조항

창고시설(공장 내 부속창고 포함), 보관용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을 보험

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수용되는 건물 안에서는 흡연, 점등 및 그 밖의 일체의 화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된 전등 및 안전등은 쓸 수 있습니다.

⑤ 냉동(냉장)위험부보장 추가조항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 및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회사는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소화설비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⑦ 공지할인 추가조항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⑧ 신규 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조항

신규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점검 실시 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작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보험가입금액 : 안전점검 시점
2. 적 용 요 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제2장 기계손해조항

제17조(목적)

이 계약에서 기계손해조항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18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로서 사업장 구내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있거나 수리, 정비 검사를 위하여 가동중지, 분해, 임시 가동 또는 동일사업장 구내에서 이동, 제조립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어야 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하며, 기계손해조항에서 보험가입금액은 제19조(보험가입금액)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나. 잔존물: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금액)

①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과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의 새로운 기계, 기계설비 또는 장치의 가액(사업장에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조립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조달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이 위 제1항의 신조달가액에 부족하거나 초과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구조 또는 재질의 결함
2.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3. 종업원의 취급잘못, 기술부족, 부주의
4. 보일러의 급수부족
5. 물리적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6. 단락 등 전기적 현상
7. 폭풍우
8.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②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생긴 손해
3.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묻지 않고), 내란, 모반, 폭동, 파업, 소요, 군사력이나 찬탈자의 폭력, 어떠한 정치조직체를 위하거나 그에 관련된 악의의 단체 및 개인적 행위, 음모, 몰수, 징발, 압류 또는 법적이거나 사실상의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4. 화재, 벼락(간접손해는 제외) 및 화재에 의한 폭발, 파열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파열(보일러의 연관내 가스폭발(Flue Gas Explosion)은 제외) 및 이들의 진화, 피난을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 항공기 또는 항공물체로부터의 떨어진 물체 및 건물의 무너짐으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6. 분실, 도난,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일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에 따른 마모, 소모, 열화(Fatigue) 또는 보일러 스케일이 진행된 결과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0. 원인에 관계없이 부식, 침식, 녹 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일어난 그 부분에 생긴 손해
11. 공급자, 시공업자, 수리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으로 책임을 지는 손해
12. 간접손해 또는 이 보험의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벨트, 와이어, 로우프, 체인, 고무타이어, 유리제품, 전기튜브 및 관구, 분쇄용함마, 여과물질, 전열체, 철망, 대나무제품, 나무제품, 여과망, 노벽, 내화성내장재 등 마모 또는 감가율이 높은 것
2. 절삭공구, 연마공구 기타 교환가능한 치구(治具), 공구류 및 금형(금속으로 만든 틀), 조형 기타 형류
3. 윤활유, 조작유, 연료, 냉매, 촉매, 수처리재료 등 운전에 제공되는 것. 그러나 변압기 또는 개폐기안의 절연유 및 수은정류기 내의 수은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제22조(관리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보수 및 운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회사의 적절한 권고 및 법률상의 준수사항과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③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험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자기의 비용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를 입은 물건은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유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승인한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통지 후 7일 이내에 손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손해상황조서, 수리견적서, 신조달가액 견적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부, 기타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사고를 입은 물건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또는 가동하거나 회사의 동의없이 임시 수리하여 사용 또는 가동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2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회사는 제2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27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27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제20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1회의 사고마다 제29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규정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한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보험의 목적이 각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②손해발생시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신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잔존물가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신조달가액}} - \text{자기부담금}$$

③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신조달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④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28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9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28조(손해방지의무)의 제2항에 따른 비용
3. 전부손해인 경우 잔존물 철거비용
- ②아래의 비용은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특별약관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공운임, 급행운임,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따른 할증임금
 2. 임시수리비. 그러나 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되고 총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손상을 입은 부분을 수리함에 따라 손상이 안 된 다른 부분을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4. 모양의 변경 및 개량으로 증가되는 비용
 5.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분해, 정비, 건조, 청소비용 또는 응고, 막힘, 이물체의 부착, 침수 등 이와 비슷한 상태를 제거하는 비용
- ③수리를 위하여 부득이 보험의 목적의 손상부분(부품)에 대해서 신구교환이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위 제1항의 손해액에 포함합니다.
- ④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인 경우, 손해발생직전의 신조달가액에서 사용에 의한 감가를 공제한 것을 위 제1항제1호의 비용으로 하며 부분손해가 나더라도 수리비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
- ⑤잔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제30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제작,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잔존물)

회사가 제20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32조(대위권)

-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4조(목적)

이 계약에서 배상책임손해조항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35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의 배상책임손해조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6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9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3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6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6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6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43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43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4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7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48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조사)

①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u>보험증권</u>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u>피보험자</u>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u>피보험자</u>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u>피보험자</u>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u>보험증권</u>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u>피보험자</u>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자동차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u>피보험자</u>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더, 스kre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 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장용 기계장치 5) 위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

	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컴프레서,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제4장 기업휴지손해조항

제50조(목적)

이 계약에서 기업휴지손해조항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로 인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5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휴지: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 중단을 말합니다.
2. 기업휴지손해: 보장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중 보험가입 경상비 및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3.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4. 경상비: 보장위험에 의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营业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중에서 기업휴지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보험가입 경상비(고정비)라고 합니다.
5. 보험가입금액: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6. 매출감소액: 손해발생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과 동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이하 "표준매출액"이라 합니다)에서 복구기간내의 실제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복구기간: 보험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그 손해의 영업에 대한 영향이 소멸되어 매출액이 복구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복구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복구기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복구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8. 이익률: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1년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 + \text{보험가입 경상비}}{\text{매출액}}$$

단, 이 기간 중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보험가입 경상비} - \text{영업손실} \times \frac{\text{보험가입 경상비}}{\text{경 상 비}}}{\text{매출액}}$$

9. 보험가액: 손해발생 직전 12개월의 매출액(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직전 해당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영업비용】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등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영업손실】 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제52조(매출액 및 이익률의 조정)

영업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의 영향이 있는 때 또는 영업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손해 사정에 있어서 표준매출액 및 이익률에 공정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3조(보상하는 손해)

- ①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이 계약의 화재손해조항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사업상으로 운용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기간의 만료일에 관계없이 손해발생이 없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수준으로 복구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입은 직접적인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기업의 중단을 초래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구내의 재산에 대한 유효한 재물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지출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3.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중지, 소멸, 취소
4. 보험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5.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6.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합니다.

제55조(손해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기업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매출감소액} \times \text{이익률} - \text{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
--

제56조(약정복구기간)

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보험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7조(면책기간)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명기한 면책기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복구기간에서 빼고 보상합니다.

제58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복구기간 만료 후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기업휴지가 1개월 이상 계속되어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매월 말에 회사가 추정하는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9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회사는 제5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이 조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제51조(용어의 정의) 제9호 및 제55조(손해액의 계산)에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이하 ‘부보비율’이라 합니다)이 약정된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제62조(손해의 경감)

- ①피보험자는 기업휴지로 인한 손해를 아래의 방법으로 경감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전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하거나 유지하는 것
 2.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장소 또는 기타 장소의 다른 재산을 사용하는 것
- ②회사는 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복구기간 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소화비용은 제외)을 제6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그 비용의 지출에 의해 감소를 면한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상합니다.

제63조(보험금 지급 후의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 계약상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64조(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피보험자가 영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사업자인 경우 이 기업휴지손해조항 약관상의 용어의 정의가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1. 표준매출액: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복구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text{표준매출액} = \frac{\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times \text{복구기간}}{\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2. 연간매출액: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 얻은 매출액을 12개월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text{연간매출액} = \frac{\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매출액} \times 12\text{개월}(365\text{일})}{\text{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

3. 이익률이라 함은 영업개시시점부터 손해발생시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 + \text{보험가입 경상비}}{\text{매출액}}$$

단, 이 기간 중에 영업손실(영업비용에서 매출액을 뺀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합니다.

$$\text{이익률} = \frac{\text{보험가입 경상비} - \text{영업손실} \times \frac{\text{보험가입 경상비}}{\text{경 상 비}}}{\text{매출액}}$$

제5장 일반조항

제6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6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화재손해조항 및 기업휴지손해조항의 경우

- 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나. 양도할 때
- 다.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라.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마.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바.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사.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기계손해조항의 경우

- 가. 보험의 목적의 용도 또는 형식을 변경한 때
- 나. 보험의 목적을 임시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응급조치에 의하여 운전 또는 사용하는 경우
- 다. 보험의 목적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정비 또는 수리하는 경우
- 라.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마.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바.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3. 배상책임손해조항의 경우

- 가.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나.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다.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6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청약의 철회)

- ①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7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④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8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6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계손해조항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업휴지손해조항 제5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7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7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7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7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8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7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8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6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6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7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7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8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79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6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6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8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8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제8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2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6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7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8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8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8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86조(약관의 해석)

-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8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8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89조(개인정보보호)

- ①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9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9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장 화재손해조항 특별약관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내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로 바꿉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설해 포함)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대설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 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문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보상한도액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한도액) 회사는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3조(자기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의 ()%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설해 포함)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대설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해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해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내지 제9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시행령 제6조(보험금지급청구절차)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을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

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

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뀝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담보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 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 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연기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일부위험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1,※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는 위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재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 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 “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공제하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냉동(냉장)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같은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變調) 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가증권재발행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유가증권이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재발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이하 “재발행비용”이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쇄비
2. 인지대
3. 신문광고비와 법원관계비용
4. 대서료
5. 기타 직접비용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75%해당액에 대하여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재발행가액의 통지)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보유 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을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전번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 중 높은 쪽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통지일의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보유유가증권 재발행가액의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를 밑돌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5조(손해의 보상)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다른 보험 계약이 없을 때 : 재발행 비용 전액
2. 다른 보험 계약이 있을 때 : 각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발행 비용

② 회사에 통지된 최종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이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보다 적게 통지한 때에는 위 제1항의 보상액에 대하여 실제 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에 대한 최종통지보유유가증권의 재발행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제2항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일 단위 계산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야외간판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희오리바람, 폭

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감으로써 생긴 손해
3.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가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로 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박접촉 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이 선박과 물리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이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설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리스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할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일체(화재보험의 목적 외의 물건을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 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초과한 실제 가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1. 리스계약 각 년도 초 : 규정손실 금액 전액
2. 리스계약 각 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 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금액을 당해년도의 규정 손실금액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3. 제7조(가치하락 부담보) 제1항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5조(보험조건의 변경)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낙 여부를 회신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①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계약 체결시의 규정손실 금액으로 한 경우 : 규정손실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사고당시 규정손실 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보험가입금액이 일부 리스인 경우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차감하여 보상합니다.
- ③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으로 한 경우
 1.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및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2. 제1호에서 계산한 금액이 제1항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규정손실 금액까지의 보험금은 리스(임대)회사에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제7조(가치하락 부담보)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선 또는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토목건설 등의 기재등록)

- ①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로서 등록 또는 차량번호의 지정 또는 표식(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전번호표를 제외)을 부착할 때나 이미 부착하고 있을 때에는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회사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71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렌탈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 중 “리스”는 “렌탈”로, “규정손실금액”은 “규정렌탈료” 또는 “정산렌탈료”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재고가액통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및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의 목적 및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 ①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중 예상되는 최고의 재고가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② 사고발생시점의 실제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점의 실제 재고가액 이상으로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재고가액의 통지)

- ① 피보험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일 현재의 재고가액을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는 해당보험가입금액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한도액과 최종통지 재고가액 중 높은 쪽을 그 재고가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확정보험료 계산시에는 월평균 재고가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확정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50% 해당액을 밀돌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가 이미 낸 예치보험료를 밀돌면 그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보상)

-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그러나, 정한 기일 내에 최종통지된 재고가액이 그 가액 작성 당시의 실제 재고가액보다 적게 통지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text{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times \frac{\text{최종통지재고가액}}{\text{최종 통지재고가액 작성당시 의 실제 재고가액}}$$

- ③ 초회 통지 기일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정한 기일 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 보상하여 드립니다.

$$\text{손해액 또는 보상한도액중 적은 금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 또는 최종통지재고가액 중 높은금액}}{\text{사고발생 시점의 실제재고가액}}$$

- 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손해보상금을 드릴 때에는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 단위 계산에 의한 복원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지급할 보상금에서 빼고 드립니다.

<용어풀이>

복원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로 손해보상금이 지급될 때 보상한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보험료로서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⑦ 손해를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2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제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제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제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제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text{제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제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제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제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금액(단, 재고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가액의 보험증권에 명기된 비율(이하 “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우리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제1조(보험가입금액),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은 각 보험의 목적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계산방식을 따릅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가액)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 “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알릴 의무)에 정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위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을 빼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적용기준)

제1조(자기부담금)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4.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화재(폭발 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화재손해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호 내지 제9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급보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조사)

-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장 기계손해조항 특별약관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 특별약관

제1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라 함은 다음에 정한 특별조건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1. 특별조건 제2조의 사고가 아닌 치안의 방해(동맹파업이나 기업폐쇄의 관련여부를 묻지 않습니다)에 가담한 자의 행위
2. 제1호의 치안의 방해를 진압시키거나 진압시키려는 또는 그 방해행위의 결과를 극소화시키는 합법기관의 행위
3. 동맹파업을 조장시키거나 기업폐쇄에 항거하는 자의 고의적 행위
4. 제3호의 행위를 저지시키거나 저지시키려는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극소화시키려는 합법기관의 행위

제2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합니다.

1. 보통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은 다음의 특별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특별약관에 적용되어야 하며 손해에 관한 규정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담되는 위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다음의 특별조건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보통약관의 제규정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보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별조건

제1조

① 회사는 다음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작업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지연이나 휴지 또는 중단으로 생긴 손해
2. 합법기관의 몰수나 징발 또는 강권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 박탈로 생긴 손해
3.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② 그러나 회사는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손해 중 일시적으로 점유권 박탈이전에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박탈 중에 생긴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또는 내란
- ② 반란, 민중봉기에 상당하는 소요, 군사적 봉기, 모반,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폭력
- ③ 힘이나 테러, 폭력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에 관련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자의 행위

특별비용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보통약관에서 부담하는 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되어 생긴 경우에 한합니다. 손해를 입은 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신조달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됩니다.

항공운임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항공운임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보통약관에서 부담하는 사고로 입은 손해와 관련되어 생긴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서 항공운임에 대하여 지급될 보상액은 보험기간 중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비용의 20%로 하되 최저 ()으로 합니다.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에서 기계손해에 가입한 피보험자 자신의 기계설비, 기계류 및 기계장치가 아닌 피보험자의 재산에 예기치 못한 급격한 손해를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아래와 같은 결과로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제3자에게 우연하게 입힌 신체상의 상해 및 질병
- ② 제3자의 재물에 입힌 우연한 손해

이 경우의 손해라 함은 위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가입물건의 물리적 폭발, 파손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열로 생긴 직접적인 손해이어야 합니다.

제2조

회사는 손해배상액에 추가하여 소송비용 및 회사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 비

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조항

제1조

회사는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에서 보상되거나 보상이 가능한 보험가입물건의 수리, 대체 및 개선비용
2. 아래의 결과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 및 그들의 친족(민법 제777조)에게 입힌 신체상의 상해 또는 질병
 - 나.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제2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의로 보상액의 조사결정이나 항변을 위임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상청구 소송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이들의 대리인은 어떤 승인, 제의, 약속 및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합니다) 또는 그 사고로 합의된 보상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 후 회사는 그 사고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장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목적물	보상한도액
가. 피보험자의 주변재물 나. 제3자 배상책임 1) 신체배상 (가) 1인당 (나) 계 2) 재물배상	

주) 보상한도액 : 1사고로 발생한 일련의 손해, 손상 혹은 제사고 그리고 각각의 모든 손해, 손상 또는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임

기계장치 내부의 화재, 화학적 폭발 및 낙뢰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증권에 명기된 보험의 목적이 그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및 화학적 폭발로 생긴 손해와 이러한 화재의 소방으로 인한 손해, 벼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의 확대로 인한 다른 기계들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내용물 손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기계손해 보장조항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저장용기로부터 누출된 원료, 반제품 및 제품에 생긴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내용물 손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생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원가를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당시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미완성 제품에 대하여는 투입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매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구입원가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절약된 비용은 공제합니다.
3. 손해를 입은 내용물이 재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이전의 상태로 재생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며 위 1, 2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존물 가액은 공제하며, 모든 간접손해(주변 재산에 입힌 손해 및 내용물의 피난중 환경오염으로 생긴 손해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되어질 보험목적물은 이 특별약관에서 분류한 각 목적물들의 금액을 기준하여 부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목적물의 부보금액이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하여 산출된 금액(상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것)보다 적을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기부담금)

이 특별약관의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손해액의 ()%로 하며 최저 ()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계 및 내용물

일련번호	기계명	내용물	보험가입금액	추가보험료

용광로, 보일러의 내화물 및 석조물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기계손해 보장조항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용광로, 보일러의 내화물 및 석조물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시에 회사가 보상하여 드릴 금액은 매년 최저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총감가상각률은 80%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할유 및 냉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기계손해 보장조항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증권에 명기된 보험의 운할유 및 냉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운할유 및 냉매에 대한 개별 보험가입금액이 이 증권의 보험가입 명세서상에 기재 되어야 하며, 손해발생시에는 적절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동성 기계 특별약관(Hull Risk)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건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의 목적 중 아래의 기계에 대하여는 홍수, 지진, 범람, 산사태, 지면의 내려앉음, 도난 및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 특약이 적용되는 기계에 대하여 그 사용장소(공장 또는 사업장)가 보험증권에 명기되어 야 하며 도난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입은 와이어 및 비전기용 케이블의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배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그 감가상각률은 최저 연 25%로 하되 감가상각율의 총합계는 75%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산업용 삭도의 비전기용 케이블은 보통약관 기계손해조항 제2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구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를 입은 전구류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전구류의 개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6개월 경과 후, 실제가액은 매월 3%로 감가상각 하되, 총합계가 8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액의 최고한도액을 1사고 당 ()로 합니다.

이익상실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 조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업장내에서 보험기간 동안에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이하 기계설비라 합니다)가 보통약관 기계손해 보장조항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영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영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시험운전, 고의적인 과부하 또는 실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한 손해
2. 마모, 침식, 부식, 물때의 퇴적침전물, 양금, 녹, 페인트 또는 광택, 표면의 굽힘 및 계속적인 작업의 영향으로 인한 등의 직접적인 결과 또는 대기 및 화학반응으로 인한 직접손해로 수리대체, 그러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보험가입이 된 기계설비에 그와 같은 원인 등으로 야기된 손해로 인하여 생긴 기업휴지 또는 휴지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계설비에 생긴 물적 손해의 결과라 할지라도 정상운전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완제품 또는 기타재료의 부족, 파손, 변질 손해
4. 공공기관에 의한 영업 및 복구에 대한 제한 조치
5.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기계설비를 수리,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6. 기계설비에 생긴 물적손해의 결과라 할지라도 이 특별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기계설비 및 그 보조설비의 손해
7. 손해를 입은 기계가 재가동 상태로 복구된 후 임차계약, 면허, 주문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 또는 해약되어 생긴 영업손실

제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액은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과 특별비용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의 상실액 :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표준 매출액에 미달된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특별비용 : 매출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도 유인한 비용. 다만,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안했다라면 보상기간 동안에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가 생겼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방지 또는 경감된 매출감소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총이익에 포함된 영업비용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보상기간 중에 지출이 중지되거나 감소되어 절약된 영업비용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4.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비례적으로 감액됩니다.
5. 회사의 보상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규정)

① 사업장 이외의 영업이익 : 보상기간 동안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받을 금액은 보상기간 동안의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기간과 가장 가까운 회계년도 12개월간의 총이익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에 지급된 보험료의 1/3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차액의 비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총이익은 피보험자의 감사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환급보험료는 사고로 기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차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③ 총이익 관련도 : 이 특별약관에 명기된 기계의 총이익 관련도란 당해 기계의 사고로 손해경감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총이익에 미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명세표에 기재된 총이익 관련도가 휴지기간 동안의 실제의 총이익 관련도보다 낮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명세표상의 총이익 관련도가 실제의 총이익 관련도에 비례하는 율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분해검사 : 조업중단 또는 휴지기간 동안에 시행된 분해정비, 검사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기간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합니다.

⑤ 재가동후의 영업이익 : 피보험자가 사고복구 후 6개월 동안에 보험에 가입한 기계를 재가동함으로써 인하여 연불판매 또는 조업중단이나 휴지의 결과로 증가된 생산량 및 이익으로부터 얻어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⑥ 보험가입금액의 복원 : 사고발생 후 남은보험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은 복원됩니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산출되며 합의된 보험가입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⑦ 기계의 물적손해 : 이 특별약관의 명세표에 기재된 기계설비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동안 보통약관 기계손해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⑧ 기록의 보존 :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최근 3년간의 재고자산명세서, 재원가명세서, 대차대조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완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훼손에 대비하여 이들 기록을 개별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⑨ 관련서류의 제출 :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상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허용한 시일 내에 보상청구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의 명세서를 구비하여 보상청구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회사가 손해액을 조사하거나 확정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회계서류 및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 자료, 설명서, 기타 증거자료와 필요하다면 보상청구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법적인술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총이익 : 매출액과 기말재고액의 합계액에서 기초재고액과 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회계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② 특정변동비용 : 이 특별약관에 보험가입 되지 않은 변동비용

1.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
2. 매입대금(할인공제)
3. 포장비, 운반비등
4. 기타 특정변동비용

③ 매출액 : 상품의 판매나 인도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얻었거나 얻을 금액(할인공제)

④ 보상기간과 공제기간 : 보상기간은 그 사고로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특별약관에 명기된 보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그러나 회사는 공제기간동안에 생긴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으며 공제기간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조업의 중단 또는 휴지가 개시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⑤ 총이익율 : 사고일 직전 회계년도의 매출액에 대한 총이익의 비율

⑥ 표준매출액 : 사고직전 12개월로부터 보상기간에 대응하는 기간의 매출액
위 5항, 6항은 영업의 추세와 사고전후 영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고가 없었더라면 영업에 영향을 주었을 변화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⑦ 연간매출액 : 피보험자의 영업이 정상상태로 복구된 날 또는 보상기간이 끝나는 날(먼저 발생한 것에 따릅니다)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이익상실 특별약관 명세표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성명	
	주소	
사업의 내용		
사업장의 소재지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		
연간보험가입금액		
보상기간		(월수)
공제기간		(일수)
연간보험료		

기계설비의 명세

일련번호	수량	기계 또는 공장설비명세 (형식, 제작자, 용량 등)	제작 년도	총이익 관련도	예비부 품명세	기계또는 공장설비 의 대체 가능기간

콘베이어벨트 및 체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사는 보통약관 기계손해 보장조항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입은 콘베이어벨트 및 체인의 손해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보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 하며 그 감가상각율은 최저 연15%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율의 총합계가 75%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의 보상책임은 끝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기계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연소엔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캠축, 실린더 라이너 등의 부속품과 피스톤을 포함한 실린더 헤드에 대해 손해가 생긴때의 손해보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최저 연 10%, 총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나선식 전기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조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기계손해조항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선식 전기코일에 대해서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전기기계에 대해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보상액은 손해발생시의 경년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최저 연 5%, 총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형전동기 유지관리 추가약관

제1조(특별조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전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8,000시간 운용 후이거나 500번의 시동 또는 마지막 분해작업 이후 2년 이내에 최소한 1회의 전체적인 개방에 의한 분해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는 적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새로운 전동기 작동후 2,000시간 후 또는 적어도 1년 후에는 분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분해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기간이 개시일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3. 계약자는 분해검사동안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4.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조건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스터빈 연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조정 추가약관

제1조(지급보험금)

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스터빈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 가스배기관의 부품에 발생한 보상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그 영향을 입은 부품에 대해 보험금은 감가상각합니다.

② 지급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부품의 총재조달비용에 {1-사용기간(주1)/통상수명(주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제조업자가 제시한 부품에 대한 통상적인 수명이 운영상 또는 사고경험과 다를 때 실질적인 수명에 관해서 계약자와 회사간 합의해야 하고 제조업자의 조언을 배제합니다.
- 주) 1. 사고시 까지의 부품 사용기간
2. 제조업자가 발행한 최근의 사양서에 의한 부품의 통상적인 수명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심정펌프 및 수중펌프 유지관리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수중펌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분해정비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해정비 하는 동안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의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적절한 시간에 정비검사에 대한 일정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모래의 침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작동을 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우물의 붕괴, 관 또는 강화벽의 붕괴로 인한 손해 또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각종 터빈 및 터보 발전기 세트 유지관리 추가약관

제1조(특별조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이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전기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분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회사의 대리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적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증기터빈과 발전기
2.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분해 검사해야 할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증기터빈 및 발전기
3.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제조업체의 추천에 의해 분해 검사해야 할 수력터빈 및 발전기
4. 제조업체의 추천에 의해 분해 검사해야 할 가스터빈 및 발전기

이들 기간은 보험보장기간의 개시와는 관계없이 처음 작동할 때부터 또는 발전기 일체 또는 부품의 마지막 분해검사일 부터 개시합니다.

계약자는 발전기의 운행지침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쌍방이 그 지침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분해검사기간 중에 보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5. 1.~4.에 각각 지정된 기간을 초과한 후에 보장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체, 재조립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비용만을 보상합니다. 또한, 해체, 재조립 및 유사한 정기적인 분해검사와 관련된 작업비용은 분해검사비용으로 간주합니다.
6.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추가약관

제1조(특별조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면책조항(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및 제규정도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추가약관상에 명기된 보일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니다.

1.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년 또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보일러에 대하여 그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기관 또는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분해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이 회사의 비용으로 검사/분해작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적어도 2주전에 그러한 분해/검사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이 조항은 보험기간의 개시일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3. 계약자는 검사 또는 분해작업 기간 중에 보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 또는 유자격의 검사기관이 동의하고 회사의 의견상 위험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4. 계약자가 이 추가약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검사 또는 분해를 수행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을 사정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장 배상책임손해조항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 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업무내용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①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

- 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내용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업무내용	업무명 : 관리자수 :
보상한도액	

②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시설의 관리, 개축, 철거, 수리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3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비행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행하는 아래에 기재된 업무로 인한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얼굴 주름살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불필요한 머리칼을 제거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전기광선 기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숙련자의 감독하에 2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가연성 빛의 화재, 열 혹은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가연성 드라이 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명칭 : 용도 : 구조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업무내용	

④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⑤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건물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물이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임차인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냉동 또는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직접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⑥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시설의 관리, 수리 또는 그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시설의 규모변경이나 이전이 아닌 구조변경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20.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프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작업내용	

①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도급업자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도급업자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2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도급업자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쏘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text{보상한도액} / \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회사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전액
 - 다.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3조(보험금의 분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학교업무】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

- 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2.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명칭 :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	--

①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학교 구내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학교경영자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자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학교경영자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신입생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학교경영자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반드시 학교측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신입생】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입한 자로서, 학교가 확정된 자를 말합니다.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피보험자와 학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치료비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 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학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학생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학교경영자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가 정비소 구내에서 차량의 이동 중 발생한 대인사고 및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시험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견인하거나 정비된 차량을 인도하는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를 말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업무내용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은 보상합니다.
26.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피보험자의 종업원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정비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대한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무면허운전자나 절취범일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업무내용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5. 차량 출고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업무내용	

곤도라운영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곤도라(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명세	설치장소 : 댓수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기타 :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합니다. 단, 6종 건설기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별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건설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설기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2.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 6종 건설기계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건설기계명세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등의 구별) : 기타 :

①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시설내용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업무내용	업무명 : 관리자수 :
보상한도액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부두구역 내에서 하역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물건 이외의 피보험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근로자(임시로 고용한 항만노조 조합원을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부두구역 내에서의 하역작업은 제외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 19. 작업의 종료(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3.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4. 하역화물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5. 위험품 취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하역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7. 선박의 관리, 절단, 낫땜질, 단접, 납땜질, 모든 열작업 등 선박의 수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8. 자연마모, 부식, 부패, 녹,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9. 고철의 하역, 선적 또는 전자식, 그레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하역 또는 선적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0.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실, 손해 또는 근로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강도, 절도, 도난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1.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32. 색깔 및 향기의 변질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3. 부두구역을 벗어나 공로를 운행하는 중 발생한 운송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4. 지붕, 문, 창 통풍장치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35. 선박사고로 생긴 위약금, 체선료, 억류, 사용손실, 운임손실, 용선료손실, 시장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하역화물 기타 선박 등 재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 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용어의 추가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항만운송 사업법 제3조에 따릅니다. 그러나 부두구역 밖의 하역은 제외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두명 :
소재지 :
범 위 :
구 조 :
하역작업내용 :

① 바के트/그레브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고철을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전자석, 그레브, 바케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비로 선적 또는 하역하는 작업으로 선박에 입힌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화재위험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입힌 하역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항만하역위험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 제1조(사고)의 사고 외에 아래에 기재된 항만해역 내(항만내의 해상, 접안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의 하역작업의 수행 또는 하역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아래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용어추가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서 하역이라 함은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항만해역 내에서의 하역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항만하역업자(싸이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항만명 :
소재지 :
범 위 :
하역시설 :
하역작업내용 :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 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①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폭발
- ③ 파손
- ④ 강도, 도난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 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 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5.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의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미만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text{손해액} \times \{ \text{보상한도액} \} \div \{ \text{재고가액의 80\%} \}$$

② 제1항의 재고가액이라 함은 계약체결전 1년간의 매월말 전체재고가액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1)창고명칭 : 2)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3)위치 : 4)창고의 구조 : 5)창고의 면적 : 6)야적장 면적 : 7)소화설비내용 : 8)관리관계 : 9)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수탁물 1)수탁물의 종류 : 2)보세화물 보관여부 : ☐ 수입화물 ☐ 수출화물 3)수량 : 4)보관기간 : 5)위탁자 성명 : 6)위탁자 주소 :
창고약관(요약) :

① 화재위험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I)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창고업자 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화재위험 보장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② 도난위험 보장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도난, 강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을 따릅니다.

도난위험보장제외 수탁물명세(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③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수탁물이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손해와 그에 따르는 수탁물의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을 따릅니다.

화재위험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수탁물의 일부만 해당될 경우)

1)수탁물의 종류 :
2)수량 :
3)보관기간 :
4)위탁자 성명 :
5)위탁자 주소 :
6)기타 :

④ 냉동·냉장장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이 6시간 미만동안 지속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2.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일시적 수리를 행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을 따릅니다.

⑤ 청과류·채소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창고업자 특별약관(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과류,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창고업자 특별약관(Ⅰ)을 따릅니다.

창고업자 특별약관(Ⅱ)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 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등 수침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1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수탁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수탁물이 보세화물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에 대하여는 송품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관시설(창고)

- 1)창고명칭 :
- 2)창고 허가번호와 허가종류 :
- 3)위치 :
- 4)창고의 구조 :
- 5)창고의 면적 :
- 6)야적장 면적 :
- 7)소화설비내용 :
- 8)관리관계 :
- 9)경비시설 및 경비방법 :

수탁물

- 1)수탁물의 종류 :
- 2)보세화물 보관여부 : ☐수입화물 ☐수출화물
- 3)수량 :

4)보관기간 :
5)위탁자 성명 :
6)위탁자 주소 :
창고약관(요약) :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경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경비업무】 경비장소 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 ⑤ 불안정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 ⑥ 불안정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에의 긴급연락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설계도,

-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총포류, 도검류, 경비건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행사, 경기, 흥행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의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2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당사자	경비대상	소재지	경비원수	비고

① 귀중품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에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을 따릅니다.

② 공동주택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을 따릅니다.

③ 업무시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I)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경비업자 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④ 경보 기계설비의 고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I)의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경비업자 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⑤ 현금(유가증권 포함), 고가품운송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I)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유가증권 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경비업자 특별약관(II)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체결한 보안경비업무 청부계약(이하 “경비계약”이라 합니다)에 의거한 보안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타인(경비업무 위탁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경비업무】 경비장소 내에서의 아래 각 호의 업무와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입안 및 설계업무로 한정합니다.

- ① 화재의 예방, 조기발견, 통보 및 소화작업
- ② 도난의 예방, 발견 및 그 처치
- ③ 불법침입자의 방지 및 배제
- ④ 불법행위의 방지, 발견 및 그 처치
- ⑤ 불안정한 키, 창, 문짝, 담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 ⑥ 불안정한 가스등, 전기등, 수도 등의 발견 및 그 처치
- ⑦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관계관서와 경비본부 및 피보험자의 긴급연락선예의 긴급연락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현금(유가증권 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12.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경비업무 수행외에 발생한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
19. 피보험자(그 사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의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경비업무 위탁자(USER)로부터 수탁받은 마스터 키(MASTER KEY) 및 마스터 키와 일체로 되어있는 자물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20.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 방화, 기타의 부정행위
22. 피보험자의 경비물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경비업무가 종료한 후에 발견된 망그러뜨림, 분실 또는 도난. 단, 도난 및 도난에 수반되는 망그러뜨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경비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것임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3. 피보험자의 경비계획서 또는 협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보험자의 부작위
24. 경비업무 위탁자의 영업시간 중에 발생한 절도, 소매치기, 줌도둑(남의 물건을 사는 체하고 훔치는 것) 및 기타 불법침입이 아닌자의 부정행위
25. 매각기기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등의 업무에 관련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기기설치 공사 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
27.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2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현금(유가증권 포함), 고가품운송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경비업자 특별약관(Ⅱ)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현금(유가증권 포함),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관 및 가공하는 물건(이하 “임가공물”이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폭발
3. 파손
4. 강도, 도난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임가공물의 가공 착수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줄절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재고조사시 혹은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 임가공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호 및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에 정한 회사가 보상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임가공물의 가액의 80% 미만일 때 :

손해액 × {보상한도액} ÷ {임가공물가액의 80% 해당액}

② 제1항 임가공물의 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 임가공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도급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아래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수행 또는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감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기간의 연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 및 종료예정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은 작업이 끝나거나 폐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를 하지 않거나 늦어진 경우 또는 회사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내용	명칭 : 소재 : 구조 및 용도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작업내용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7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아 래

인격침해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2. 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3.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행하거나, 알고 있거나 동의하여 형사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책임개시일 이전에 행하여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책임개시일 이후에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판물, 구두 기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광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긴 인격침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2.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3조(보상한도의 특칙)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또는 손해 방지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오염제거작업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합니다)과 오염제거비용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을 수반하지 않는 오염제거비용에 대하여도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시설명세	명칭 : 구조 : 용도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 :
업무내용	

구외보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여객운송이나 유람, 관광 또는 도하이외의 목적으로 소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아래에 기재된 보트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정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트명	건조년도	재질	정원	기관의 명칭및 구조	성능및 톤수	권리관계	운항구간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설계사, 기사, 또는 측량사로서 지도, 설계서, 의견서, 보고서, 검토서, 디자인 혹은 시방서의 작성이나 승인 및 감독, 검사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함한 전문직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완성작업이 타인이 사용중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져 다른 유체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합니다.

17.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공사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결함 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 또는 결함 있는 생산물(또는 공사물건)을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20. 경주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르는 일체의 준비행위를 포함합니다)되는 이동장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폭발, 붕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계약사항 :
계약명칭 :
계약당사자 :
성 명 :
계약기간 :
계약내용 :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

①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소급보상일자 이후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및 피보험자나 전임자에 고용된 자가 공인회계사로서 처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공인 회계사로서의 전문적인 직무 위반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집행인, 수탁인, 관재인, 청산인, 중역 또는 회사서기로 지정되어 처리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그러한 지정에 따른 수수료가 피보험자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만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기준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중상 또는 비방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 또는 피보험자나 업무에 관련된 전임자에 고용된 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나 악의에 인한 경우
3. 이익투자, 자본투자, 개인투자 또는 투자재원의 증진이나 서비스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조언, 유도, 추천 또는 견해 등으로 발생하는 배상청구
단,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수수료의 수수여부와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4.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능, 이온화, 핵연료로부터 방사능에 의한 오염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 인한 핵 폐기물에 인한 경우

제4조(기록의 완비)

피보험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기간 동안에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그 원인 또는 그 사유의 구체적 상황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여하한 배상청구
2. 피보험자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제기할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부터의 통지의 수령
3. 배상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을 원인 또는 사유가 발생할 상황

제6조(자기부담금)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I) (손해사고기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특별약관과 이에 첨부된 추가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로 인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나.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생산물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 「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①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②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①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②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① 1.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2.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불이행 ② 1.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2.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 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② 아래의 경우에는 전세계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다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중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 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① 전기공급차질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전기 유지·보수작업을 보장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② 판매인추가특별약관

제1조(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I)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 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판매인 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 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등의 성명 :
주소 :

③ 인증기관 마크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I)을 따릅니다.

④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I)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판매한 친환경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동 약관 및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비용)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제한합니다.
- ② 제1항 비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친환경농·축산물을 구매자 및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대응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요에 소요된 비용(손해배상금, 화해금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고 후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컨설팅비용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회사는 그 지급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당해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 또는 타인에 손해를 줄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을 말함)이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2. 재물의 멸실, 오손, 분실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물적 손해(가치의 감소 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 재조달비용 등을 말함) 및 당해 재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한 손해

3. 신체장해를 입은 자에 대해 생긴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이익(逸失利益), 장제료 등)
4. 이 보험계약 및 이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5.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조치와 관계된 비용이상으로 소요된 비용
6.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또는 청구된 것에 관계된 업무를 변호사에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포함)
7.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법령 등에 의한 규제 또는 요청을 포함)에 의한 개인 정보의 차압, 수용, 몰수, 파괴 등. 단, 소방 또는 피난이 필요한 거쳐가 된 경우는 제외
8.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입은 손해(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직무상 행한 불성실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포함)
9.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실수익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감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1. 제초제가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2.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및 기생충란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3. 친환경농·축산물의 시판 이전에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4. 회사에 통보되지 아니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농·축산물
15. 보험기간 중에 동일 작물에 2회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6. 친환경농·축산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비용
17. 잔류농약이 검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전에 친환경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급한 비용

제4조(하나의 사고의 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 동일의 원인 또는 사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를 불문하고, 최초에 사고가 발생한 때를 전체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5조(보상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 보상기간은 사고의 대응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말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 중 누군가가 최초에 발견한 때에 시작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때에 끝납니다.

제6조(손해액의 산정)

이 보험계약에 있어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것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회수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9조(보험금의 청구)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공인된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증명서류
2. 영수증 등 소비자의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보상한도)

①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손해의 금액이 보험증권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사고 및 보험기간 중에 보상해야하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I)을 따

룹니다.

※ 용어풀이 ※

농·축산물	농·축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단순처리가공품을 포함합니다.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이하 "가공원료"라 합니다)로 하여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제조·가공한 단순처리가공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합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잔류농약	잔류농약이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친환경농·축산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하는 농약을 말합니다. 다만 친환경축산물인 경우는 항생제 검출을 포함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④-1.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1)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비용)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피보험자의 농·축산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잔류농약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검사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1회의 재검사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생산물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I)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④-2.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2)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비용)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시 피보험자가 이미지 복구를 위해 신문 또는 TV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광고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1회의 광고게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생산물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I)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⑤ 유전자, 동식물 성장 관련 소송위험 면책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유전자, 동식물 성장 관련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환경호르몬 관련 소송위험 면책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환경호르몬 관련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환경호르몬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에 혼란을 주어 인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하는 내분비교란물질을 말합니다.

⑦ 품질저하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I)(손해사고기준)특별약관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 2.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 4.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 5.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I)(손해사고기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⑧ 광우병, 구제역, 패혈증, 비브리오팀 제외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광우병, 구제역, 패혈증, 비브리오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⑨ 농협 납품분 한정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등을 포함합니다)에 납품된 생산물에 한정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II) (배상청구기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특별약관과 이에 첨부된 추가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상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상일자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 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5. 아래로 인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나.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 다.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 부품 또는 중간재등의 제조업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4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5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8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상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6조(보고연장보상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상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상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생산물	“생산물”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가공 또는 공급한 생산물 및 시공한 작업(이하 「완성작업」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 아래의 경우는 「생산물」에서 제외합니다. (1)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방치된 작업 2.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피보험자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피보험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만,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3)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에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1)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효용성은 감소하지만 아래 (2)의 조치에 의해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체물로서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1) ① 해당 재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피보험자의 작업의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①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피보험자의 작업의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거 ② 피보험자의 계약상 조건에 대한 이행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대한민국 ②아래의 경우에는 전세계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 다만, 대한민국의외 지역에서 판매, 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① 전기공급차질 보장 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전기 유지·유지보수작업을 보장위험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 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② 판매인추가특별약관

제1조(추가피보험자)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판매인 등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Ⅱ)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판매인 등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보증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생산물을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부품을 검사, 전시, 시험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긴 후에 원래의 용기에 재포장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생산물의 전시, 설치 또는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판매인 구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물을 전시, 설치 또는 수리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판매인 등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상 수행하여야 하는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판매인 등이 생산물에 상표를 붙이든지 바꾸거나 생산물을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판매인 등이 생산물이나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또는 생산물의 용기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II)을 따릅니다.

생산물명 : 판매인등의 성명 : 주소 :

③ 인증기관 마크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인증기관의 확인, 검사, 보증이 부여된 생산물만을 보험가입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약관상의 인증기관이라 함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관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손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 특별약관(II)을 따릅니다.

④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판매한 친환경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을 동 약관 및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비용)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을 직

접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제한합니다.

② 제1항 비용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친환경농·축산물을 구매자 및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대응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요에 소요된 비용(손해배상금, 화해금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고 후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컨설팅비용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회사는 그 지급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당해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 또는 타인에 손해를 줄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 기관을 말함)이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2. 재물의 멸실, 오손, 분실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물적 손해(가치의 감소 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리비, 재조달비용 등을 말함) 및 당해 재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한 손해
3. 신체장해를 입은 자에 대해 생긴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이익(逸失利益), 장제료 등)
4. 이 보험계약 및 이 보험계약과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5.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조치와 관계된 비용이상으로 소요된 비용
6.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또는 청구된 것에 관계된 업무를 변호사에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요에 소요된 비용 포함)
7.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법령 등에 의한 규제 또는 요청을 포함)에 의한 개인 정보의 차압, 수용, 몰수, 파괴 등. 단, 소방 또는 피난이 필요한 거처가 된 경우는 제외
8.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입은 손해(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직무상 행한 불성실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포함)
9.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실수익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1. 제초제가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2.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및 기생충란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3. 친환경농·축산물의 시판 이전에 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4. 회사에 통보되지 아니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농·축산물
15. 보험기간 중에 동일 작물에 2회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16. 친환경농·축산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비용
17. 잔류농약이 검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전에 친환경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급한 비용

제4조(하나의 사고의 정의)

이 추가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 동일의 원인 또는 사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를 불문하고,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전체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5조(보상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있어 보상기간은 사고의 대응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말하고 사고가 발생

한 것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 중 누군가가 최초에 발견한 때에 시작하여 그 일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때에 끝납니다.

제6조(손해액의 산정)

이 보험계약에 있어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것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회수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39조(보험금의 청구)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공인된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증명서류
2. 영수증 등 소비자의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보상한도)

①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한 손해의 금액이 보험증권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사고 및 보험기간 중에 보상해야하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Ⅱ)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농·축산물	농·축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단순처리가공품을 포함합니다.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이하 "가공원료"라 합니다)로 하여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제조·가공한 단순처리가공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합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잔류농약	잔류농약이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친환경농·축산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하는 농약을 말합니다. 다만 친환경축산물인 경우는 항생제 검출을 포함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④-1.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1)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비용)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피보험자의 농·축산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잔류농약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검사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1회의 재검사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생산물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Ⅱ)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④-2.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2)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친환경농·축산물 신뢰회복비용손해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비용)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시 피보험자가 이미지 복구를 위해 신문 또는 TV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광고비용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한도)

- ① 회사는 1사고당 1회의 광고게제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생산물배상책임손해 특별약관(Ⅱ) 및 추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⑤ 유전자, 동식물 성장 관련 소송위험 면책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유전자, 동식물 성장 관련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환경호르몬 관련 소송위험 면책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환경호르몬 관련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환경호르몬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에 혼란을 주어 인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방해하는 내분비교란물질을 말합니다.

⑦ 품질저하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Ⅱ)(배상청구기준)특별약관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2.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4.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5.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산물배상책임특별약관(Ⅱ)(배상청구기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⑧ 광우병, 구제역, 패혈증, 비브리오팀 제외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광우병, 구제역, 패혈증, 비브리오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⑨ 농협 납품분 한정 추가특별약관

당사는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등을 포함합니다)에 납품된 생산물에 한정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스사업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합니다)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하 용기 등이라 합니다)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 용어풀이 ※

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정한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냉동제조, 고압가스충전,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자 및 신고를 한자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에 정한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함
용기등 제조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한 용기제조, 냉동기 제조, 특정 설비 제조를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함
가스사용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고압가스 저장을 허가받은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를 허가받은 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 사용 시설의 가스사용자를 말함
가스취급업무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가스사고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훼손,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함
수입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용품 또는 가스용기 등을 수입한 자를 말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③ 제2항의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 나이, 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더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12.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
1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14.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15.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 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 충전사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보험가입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손해)를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피해자에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신체손해는 소비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액화석유기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1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2]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소비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등을 제외한 제3자에게 발생

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판매사업자의 승낙없이 설비이동, 변경 또는 새로운 가스기기 등의 설치를 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

③ 판매사업자가 소비설비의 점검결과 불비한 것으로 지적·통지된 부분을 개선치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

제4조(보험금지급의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아 래 -

회사는 본 특별약관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서류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확인원」이 첨부된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10영업일이내에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대위권)

회사는 보통약관 제47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특례기준」에서 정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

사고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용기가스) 소비자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 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사고의 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제외합니다.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 차량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포장마차 등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출장부페, 연회 등의 장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데우기 위해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 기타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고정된 형태가 아닌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등
공급설비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 액화석유가스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소비설비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아래에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	--

②-1.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초과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추가특별약관(이하 “보장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손해금액은 “보장추가특별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대위권)

회사는 보장추가특별약관 제5조(대위권)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7조(대위권)를 준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장추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1】

※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1급	1,500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골절 9. 3도 화상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體表)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상박골간부 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능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 화상 등이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골절 5. 치골 · 좌골 · 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 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골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 화상 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 중골은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모든 불완전골절(비골(鼻骨)골절,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은 제외한다)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개발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骨片)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2】

※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등 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컷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8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치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히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③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가스사고배상책임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4.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5.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더,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 1)내지 4)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 진흥법상의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또는 기타 공인된 사회기관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① 구내치료비지급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 “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4.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5.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0.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체육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1.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3.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주차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단,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6호 제외) 및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차량출고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물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명세	상호(성명) : 구 조 : 면 적 : 권리관계 : (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 관리인여부
업무내용	

③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줌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내 용
시설 내용	명 칭 : 용 도 : 수 량 : 설치장소 :
업무 내용	업 무 명 : 관리자수 :
보상한도액	

④ 음식물 추가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채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행정규칙등 하부규정을 포함합니다)을 위반(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테러,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기타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애에 대한 배상청구
13. 아래에 인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 나.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그러나 그 생산물을 타인이 사용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6.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19.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생산물(또는 공사물건)명 :

판매인명 :

판매지역 :

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1. 일반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에 대하여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안전검사기관,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위험”에 대하여 제1항 이외에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적 손실
12.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
1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다만,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 3]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별표 4]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더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

제5조 (피보험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의 피보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관리주체(용어의 정의 참조요망)로서 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6조(사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위험

제7조(피보험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위험”의 피보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용어의 정의 참조)으로 지정된 자로서 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8조(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위험”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 업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용어풀이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어린이의 놀이에 활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기구 등)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안전검사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안전검사	"안전검사"라 함은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합·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6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제1항의 제조업자가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치검사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자(이하 “타인”이라 합니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상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

-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 ⑧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⑨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체육지도자 등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 ⑩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⑫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손해금액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3]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1급	1천5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무릎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8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외의 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3급	800만원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파부 분쇄 골절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 대퇴골 파부(원외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파부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7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5급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4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혜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8급	180만원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8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근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개 또는 12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20만원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개 또는 10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2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험금액	상 해 부 위
12급	60만원	1.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15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4개 또는 5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3급	60만원	1.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동안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2개 또는 3개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14급	6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이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4]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급	8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천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천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5천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4천8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6급	4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3천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2천4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9급	1천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급	보험금액	신 체 장 해
11급	1천200만원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또는 6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또는 4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3.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4.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함)

- 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9.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용어풀이

학원	“학원”이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원’ 시설, ‘교습소’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라 함은 학원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자, 임원 및 근로자를 포함하되 근로자의 경우는 이들이 업무에 관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법정관리인, 파산관재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피보험대

	상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①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하 “타인”이라 합니다)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④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⑤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⑥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 ⑦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⑧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⑨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⑩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⑫ 학원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이하 “타인”이라 합니다)가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의료법상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발생한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② 타인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형법상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타인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④ 타인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⑥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방사선, 방사능, 원자핵 물질에 의한 손해 및 공해물질로 인한 손해
 - ⑧ 타인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⑨ 상해를 입은 타인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체육지도자 등 피보험자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가 치료하여 가중된 손해
 - ⑩ 학원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⑪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 ⑫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타인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임차자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차한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 래

1. 주소 :
2. 건물의 구조 또는 물건명 :
3. 건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
4. 임대자 :
5. 임차자 :
6. 임대기간 :
7. 임대차 목적(사용용도)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8.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 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자연소모, 녹, 쥐가 쏘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 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입금액의 80\% 해당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 제43조(보험금의 분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학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4장 일반조항 특별약관

혼합(Package)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계약자가 둘 이상의 보장조항을 혼합(Package)하여 혼합(Package)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는 각각의 조항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혼합계약(Package Policy)의 정의】

혼합계약(Package Policy)이라 함은 1인의 계약자가 둘 이상의 보장조항을 일괄가입하여 보장받는 계약방식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방법 등)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등은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보험료의 추징 및 반환)

보험기간 중 일부 보험종목의 해지 등으로 인해 혼합계약(Package Policy)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추징 또는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당해계약의 혼합계약(Package Policy)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Package할인의 적용을 인정합니다. 단,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란 계약이 해지될 때 약관 또는 규정상 일단위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계약의 혼합계약(Package Policy)으로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시점에서 Package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할인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미경과기간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하며, 해지 등에 따른 보험료의 반환은 각각의 보험종목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아래 기준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화재손해 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화재손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계손해 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기계손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책임손해 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업휴지손해 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기업휴지손해조항에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